

고 시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7 - 99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96호(2007.06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8-111호(2008.04.03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, 조합설립인가(2009.07.27) 및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3-70호(2013.07.04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8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17년 7월 27일

성 북 구 청 장

관 리 처 분 계 획 인 가 고 시

1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-37번지 일대 (94,245㎡)
4. 사업시행자 :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황윤희)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7년 7월 27일
6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구 분		대지면적(㎡)	동수	층 수	세대수	연면적(㎡)
공동주택	소계	69,161.00	21동	지하3층~지상29층	1,968	285,156.39
	분양	61,377.64	21동	지하3층~지상29층	1,632	255,073.59
	임대	7,783.36			336	30,082.80
상가		992.00	4동	지하1층~지상1층	41	2,455.75

나. 토지이용계획

총 계 (㎡)	택 지(㎡)			정비기반시설(㎡)						
	소 계	공동주택	종교시설	소 계	공공공지	공공청사	학교용지	도로	복지시설	녹지
94,245	73,369	70,153	3,216	20,876	1,109	153	874	7,766	747	10,227

다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							상가 면적 (㎡)
	소계	38	45	51	59	74A	74B	84A	84B	84C	84D	84E	101	116	
계	1,968	152	142	42	546	170	148	328	49	230	94	44	22	1	2,455.75
조 합 원	476	0	0	0	255	35	7	57	0	58	8	41	14	1	742.62
보류시설	4	0	0	0	0	0	1	1	1	1	0	0	0	0	
일반분양	1,152	0	0	0	291	135	140	270	48	171	86	3	8	0	1,713.13
임 대	336	152	142	42	0	0	0	0	0	0	0	0	0	0	

라. 용도폐지 또는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

구분	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						
	소계	도로	녹지	공공공지	학교	공공청사	복지시설
면적	20,876	7,766	10,227	1,109	874	153	747
구분	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						
	소 계	도로	대지	주차장(1)	주차장(2)		
면적	8,710	6,197	1,598	261	654		

마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

-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이주기간 완료후 일부철거 예정
- ※ 위 철거 예정시기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음

7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(☎ 02-2241-2833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